#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주호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044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9.

발 의 자:주호영·김예지·김형동

이헌승 · 김기웅 · 김대식

고동진 · 김도읍 · 조지연

이달희 • 권영세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'2급 언어재활사'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해 '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원·대학·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·학사학위·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'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, 이 규정을 근거로 원격대학 졸업생도 2급 언어재활사 시험응시 자격을 부여해 왔음.

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이 2급 언어재활사 자격요건을 규정한 조항의 문언을 해석함에 있어 '원격대학'을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, 원격대학 출신으로 현장에서 근무 중인 언 어재활사들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있음.

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은 도입 이래 10여년간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재학생과 졸업생에 대해 응시자격을 부여해 왔으며, 현장에서 문제없 이 발달장애 및 발달지연 아동의 언어 재활에 기여해 왔던 점을 고려 하여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재학생과 졸업생에 대해서 언어재활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.

또한, 사회복지사, 임상심리사, 보건교육사, 장애인 재활상담사 등다양한 국가자격증이 원격대학에서의 학사학위·전문학사학위를 그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기에 형평성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원격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·학사학위·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2급 언어재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재학 생 또는 졸업생은 실습·실시수업이 충분히 담보될 것이라고 기대하 기 어렵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원격대학에서 관련 학과의 석사 학위·학사학위·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고 해당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 한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72조의2제2항 및 제5항). 법률 제 호

###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2조의2제2항제1호나목 중 "대학"을 "대학·원격대학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대학원·대학·전문대학"을 "대학원·대학·전문대학 ·원격대학"으로, "사람"을 "사람"으로 하며,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대학원·대학·전문대학"을 "대학원·대학·전문대학"을 "대학원·대학·전문대학"을 "대학원·대학·전문대학 ·원격대학"으로 한다.

다만, 원격대학에서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·학사학위·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고 해당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특례) 이 법 시행 전에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원격대학에서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57조의4제2항에 따른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·학사학위·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이 법에

따른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.

제3조(언어재활사 자격증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원 격대학에서 석사학위·학사학위·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언어재 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2조의2(언어재활사 자격증 교	제72조의2(언어재활사 자격증 교
부 등) ① (생 략)	부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언어재활사의 종류 및 국가	②
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 각	
호의 구분과 같다. 이 경우 외	
국의 대학원・대학・전문대학	
(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	
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	
학교를 말한다)에서 언어재활	
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	
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	
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	
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	
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	
으로 본다.	
1. 1급 언어재활사: 2급 언어재	1
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	
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	
해당하는 사람	
가. (생 략)	가. (현행과 같음)
나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	나
<u>대학</u> 에서 언어재활 관련	<u>대학 · 원격대학</u>
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	

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 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

2. 2급 언어재활사: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<u>대학원·대학·</u> 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·학사학위·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<u>사람</u> <u><단서</u> 신설>

#### ③ • ④ (생 략)

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자격 증의 교부·재교부 절차와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언어재활기관의 범위, 대학원·대학·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학과와 언어재활사로서 이수하여야하는 관련 교과목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-
2
<u>대학원·대학·</u>
<u>전문대학 · 원격대학</u>
<u>사람.</u>
다만, 원격대학에서 관련 학
<u>과의 석사학위·학사학위·전</u>
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
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
는 기준에 따라 현장실습과목
을 이수하고 해당 학위를 취
득한 사람이어야 한다.
③·④ (현행과 같음)
⑤
<u>대학원·대학·전문대</u>
학·원격대학